

#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26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3. 05. .  
제안자 : 평창군수

## 1. 제안이유

- 평창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(맑은약속)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운영 사무를 평창군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에 민간위탁 하고자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제4조, 제7조 등 관계규정에 따라 평창군의회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위탁사무명

-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(맑은약속) 운영

###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, 동법 시행령 제25조
-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
- 필요성 :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사업 특성상 농특산물 유통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생산유통통합조직(평창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)이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기에 민간위탁을 추진함

## 다. 위탁사무 내용 등 위탁 범위

- 평창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(맑은약속) 운영
  - 구축 기본장비, 서비스 운영 및 유지·보수
  - 시스템 관리, 고객 응대 및 공급업체 관리 등
  - 콘텐츠 관리(상품 촬영 및 이미지 제작, 상품 등록 등)
  - 홍보·마케팅(기획전 및 판촉 이벤트 행사, 온라인 홍보 등)

## 라. 위탁시설 개요

- 평창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(맑은약속)
  - <https://www.ehappy700.com>



## 마. 민간위탁기간

- 2023. ~ 2026.(3년)

## 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수의계약

- 수의계약 근거
  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

## 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○ 사업비 : 100,000천원(군비 50,000, 자부담 50,000)

※ 군 50%, 농협군지부 30%, 평창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20%

○ 산출근거

구분	내용	사업비(천원)		
		계	군비	자부담
계	-	100,000	50,000	50,000
구축 장비 및 서비스 관리	도메인, 서버 및 DB 호스팅, 결제서비스 등	4,466	2,233	2,233
유지·보수	시스템 종합 관리, 고객 응대 및 공급업체 관리 등	22,020	11,010	11,010
콘텐츠 제작	상품촬영 및 상세콘텐츠 이미지 제작, 상품 등록	12,900	6,450	6,450
홍보·마케팅	네이버 지식쇼핑, SNS활동, 기획전 및 이벤트 추진 등	60,614	30,307	30,307

## 아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

-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수익과 운영효율의 증대를 위해 원활하게 평창군 농특산물을 유통·판매할 수 있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자로의 위탁운영이 필요함
- 위 요건을 갖추고, 농·축산물의 판매 및 유통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(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2,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목적)으로 한 생산유통통합조직인 평창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 민간위탁함이 적정하다 판단됨

## 자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○ 운영현황 및 실적(최근 3년 이내)

연도	업체수	품목수	매출액(천원)	비고
2022	45	290	1,382,524	
2021	46	306	117,865	
2020	47	265	40,646	

# 관계법령 발취

## □ 지방자치법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## □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

제4조(대상사무)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을 위하여 능률성도 함께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

제5조(위탁조건 및 기간)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한 그 필요성·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춰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충분조건 :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위탁사무
2. 필요조건 : 제7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

③ 위탁사무의 위탁기간(이하 “위탁기간”이라 한다)은 3년 이내로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포함할 경우 5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필요할 경우 재위탁 할 수 있다.

제7조(의회의 동의)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3.2.3.>

② 군수는 재위탁 또는 재협약을 할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립하여 그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## 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
제9조(계약의 방법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(指名)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
## 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5조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
4. 특정인의 기술·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·구조·품질·성능·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
과.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물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·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